

## 나사렛 국제선교회 총회 진행규칙

나사렛 국제선교회 중앙위원회는 대회 참가 대의원들이 다음 규칙들을 채택해줄 것을 권하는 바입니다:

### 입장

1. 방문객들은 총회 관련 각 모임에 참관할 수 있다. 총회관련 자료들은 대의원들에게만 배부되며, 관람객들에게는 순서지만 주어진다.
2. 대의원들은 모든 모임에 참가할 때 반드시 명찰을 부착하도록 한다.

### 의사 진행 및 투표 절차

1.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대의원들은 자기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마이크 앞에 다가가, 의장이 지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름과 소속 연회를 분명히 밝힌 다음 말 할 수 있다.
2. 의장은 발언자를 지목하는 일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3. 대의원은 주어진 의제에 대하여 한 번에 2 분이상씩 말할 수 없으며, 동일한 질문에 대하여 두 번 이상씩 말할 수 없다. 대기 중인 다른 대의원들이 모두 한번씩의 질문 기회를 갖기 전에 어느 한 대의원이 두번째 질문을 할 수 없다.
4. 성립된 동의안들은 모두 (회의 진행요원들을 통하여) 기록 서기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거기에는 동의안 제출자의 이름과 소속 연회가 반드시 표기되어야 한다.
5. 총회 석 상에서의 특정 결의안에 대한 토론이나 논쟁은 관련 절차를 모두 포함하여 30 분을 초과할 수 없다.

6. 논쟁이 진행되는 동안 의장은 대의원들에게 찬성과 반대 사이의 입장을 분명히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7. 총회에서 검토할 결의안들은 2009년 2월 15일 전까지 모두 나사렛 국제선교회 중앙사무처로 제출되어야 한다. 기한을 넘긴 결의안들에 대한 접수는 결의안 채택위원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에 따른다.
8. 의회의 권위. 개정된 *Robert Rules of Order*에 내포된 규칙들이 총회의 모든 절차에 적용되며, 거기에 직접 언급이 없는 그외 세부적인 관련 사항들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된다.

#### 일반적인 지침

1. 회의장 내에서의 공지 사항은 총회 순서와 관련된 것들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것에 한 한다. 그외 다른 광고나 소식, 그리고 메시지는 모두 총회 개시판을 사용하여 전달하도록 한다.
2. 모든 총회 관련 모임에서 의장석에 전달하는 메시지나 소식은 반드시 회의 진행요원을 통하도록 한다.

**나사렛국제선교회(NMI)**  
**제안된 개정안들과 결의안들**  
**21 차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총회**

**결의안 1**

**출처: NMI 중앙 협의회(General Council)**

다음과 같이 개정을 결의합니다:

단어 “중앙(General)”을 삭제하고, 대신 단어 “세계(Global)”을 기입한다. 특별히 *교리와 장정의 법 조항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용어에서 적용된다: 중앙 협의회(General Council), 중앙 의장(General President), 중앙 국장(General Director), 그리고 중앙 대회(General Convention).

이유:

- 이 개정은 이들 사람들, 조직들, 그리고 모임들에 대한 대표적 영역의 특징들을 분명하게 나타낸다.
- “세계적인 (Global)” 의미는 모든 나라들과 모든 세대들을 포괄하는 표현이다.
- 이 개정은 다른 교단들과 선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일할 때, 국제적인 정체성을 제공할 수 있다.
- 어떤 문화권에서 “중앙(General)”의 의미는 위계적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세계적(global)”이란 용어는 각 나라의 모든 나사렛국제선교회(NMI)를 같은 위치의 협의체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결의안 2**

**출처: NMI 중앙 협의회(General Council)**

다음과 같이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칙 2 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결의합니다:

본 조직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 ~~온 교회로 하여금 선교 사업에 활발하게 헌신하도록 하며 일치된 기도와 전 세계 구원의 필요성을 연구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 ~~나사렛 성결교회 선교지역에 관한 넓은 지식을 얻도록 한다;~~
- ~~젊은이들을 격려 고무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선교 지역에서 선교 활동에 이바지하도록 한다;~~
- ~~이 회칙 다른 조항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는데 있다.~~

기도, 제자양육, 교육,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를 구성하는데 있다.

이유: 이 개정안은 NMI 의 목적과 목표들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하게 진술한다.

### 결의안 3

#### 출처: NMI 중앙 협의회(General Council)

회칙 3 조 3 항의 2 번째 단락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개정되어야 할 부분: “모든 연회와 모든 개 교회의 나사렛국제선교회(NMI) 조직들은 중앙 NMI 를 구성한다. 중앙나사렛국제선교회는 나사렛성결교회의 보조기관이 될 것이다.”

이유:

- 중앙나사렛국제선교회는 더 이상 하나의 보조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기관은 나사렛교회의 한 사역인 것이다.
- 나사렛교회의 *교리*와 장정은 NMI, NYI, and SDMI 를 “보조기관(auxiliaries)”로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의 용어사용에 있어서, 보조적(auxiliary)이라는 단어는 “정식 팀의 일원이 아닌, 보충적인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그룹”으로 규정되고 있다. “보조적(auxiliary)”이라는 말의 동의어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둘째의, 예비의, 보완하는, 하찮은, 비본질적인.
- 대조적으로, 본질적(essential)이라는 단어는 “어떤 주의나 그룹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자질들을 제공하는 어떤 것의 본질이 되는 부분”으로 규정이 된다. “본질적”과 동의어는 “기초적인, 원천인, 절대 필요한, 필수적,” 를 포함한다.

- NMI 는 나사렛교회 안의 많은 사역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이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
- NMI 는 핵심적인 팀의 한 부분인 것이다.

#### 결의안 4

##### 출처: 로스 엔젤레스 연회(LA District)

회칙 4 조 회원권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 제 4 조. 회원권

A. 회원: 나사렛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교회의 현 상태가 조직적이든, 선교-형태이든, 개척 시작이든, 혹은 하나의 조직된 교회 안에 존재하는 다회종적 교회이든 상관하지 않고, 현재 연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 나사렛교회에 출석하는 자 그리고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지지하는 사람은 그 개교회/회중의 나사렛국제선교회 (NMI) 의 회원이 될 수 있다.

2. 이 조직의 정관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경우, “회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연회에서 인정한 회중(congregation)-의 회원들 에 출석하는 NMI 회원들을 의미한다.

B. ~~협동회원: 나사렛교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상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참가하는 자는 본회의 협동 회원이 될 수 있다.~~

#### 제 6 조 제 2 항 A3(1-3). 연회 회의

##### A. 연회 대회 (convention) (3. 회원권)

a. 오직 해당 연회의 회원만이 연회가 인정하는 모든 경우의 교회/회중들의 모임의 회원들은 직책상 또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봉사할 수 있다.

b. 대회의 직책상 회원은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회 협의회; 연회 감독; 개교회의 연회가 인정하는 교회들/회중들의 모든 임명 교역자들과 전임 사례비를 받는 모든 부교역자; 연회 실행위원회 평신도 위원; 연회가 끝난 당 해년의 개교회 연회가 인정하는 교회들/회중들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새로 선출된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또는 새로 선출된 회장의 불참 시 새로 선출된 부회장;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위원; 은퇴 교역자; 은퇴 선교사; 자국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 선교사 피임명자; 그들이 봉사하는 연회에 거주하는 모든 이전 연회회장 등이다.

c. 각각 개교회에서 연회가 인정하는 교회/회중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들이다. (만 15 세이거나 그 이상) 선출된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25 명 또는 그 이하의 각기 연회가 승인하는 회중의 나사렛국제선교회로부터 2 명의 대의원 (협동회원을 제외); 이 수를 넘는 경우 각 25 명당 1 명 혹은 초과 과반수에 1 명의 대의원 추가.

이유:

NMI 회원권은 연회가 인정하는 모든 회중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연회가 인정하는 모든 회중들은 그들이 대의원들을 연회 NMI 대회에 파견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NMI 규정(정관)에 따르면, 오직 조직된 교회들만이 연회 NMI 대회에 대의원들을 보내도록 허용되어져 있다. 이것은 영어를 사용하는 조직된 교회의 한 지붕아래서 활동하고 있는 개척단계의, 선교형태의, 아직 조직되지 않은 소수 민족교회들과 다인종교회들의 대표자들과 그들의 참여를 부인하는 것이다.

연회 NMI 대회 (conventions)에서, 개척상태의, 선교형태의, 조직되지 않은 소수인종교회와 다문화다인종 회중들은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그들에게 투표권이 없기에 자신들의 존재가 배제되는 것을 느낀다. 이 결과 이들 교회들은 그들만의 선교사들과 이에 필요한 조직들을 구성하게 된다. 그 후 이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될 때, 이들 교회들은 그들 자신을 나사렛교회의 선교활동과는 연결되지 않는 선교활동에 전념하게 된다.

이 결의안은 2005-2009 교리와 장정의 “개 교회; A. 조직, 이름, 법인단체, 자산, 제한, 합병, 무조직; 100.1 다문화 회중 교회”라는 항목에 의해서 지지 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진술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다문화 회중교회들에 대해- 즉 그 교회 안에는 각각의 개별적인 회중들이 완전히 조직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연회 실행위원회는 연회감독과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에 따라 그들 각각의 회중들에게 조직된 개 교회의 권리들과 특권들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개 교회; B.

회원권; 107.2. 교회-형태 선교의 회원들,”의 항목도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기 때문이다: “아직 개 교회로 조직이 되지 않은 교회 형태의 선교조직도 107 과 107.1 에 따라 매년 연회의 통계를 위해 교인 수를 보고하고 그 수가 통계에 잡히게 된다.”

## 결의안 5

### 출처: NMI 중앙 협의회 (General Council)

회칙 제 5 조, 제 1 항 2. 구성 2)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협의회와 임원, 제 1 항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 2. 구성, 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협의회 임원들은 기도, 제자양육, 교육,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선교-교육, 선교사-후원회 (LINKS), 기도와 금식, 선교 소명, 옥합헌금 서기, 선교사 건강관리, 근로봉사 전도단, 세계 선교방송 서기, 설외, 나사렛 구제사역, 아동 선교, 청년 선교, 그리고 개 교회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역을 위한 책임을 맡는다. 분회 회장들은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임원이 된다. 협의회 임원은 한 개 이상의 직위를 가질 수 있으나 투표에서 오직 한 표만을 갖는다.~~

이유: 나사렛국제선교회(NMI)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NMI 의 4 개 목표들을 통하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도, 제자양육, 교육과 구제. 협의회 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와 같은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의회 임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자료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NMI 의 목적을 진술하는 것이 협의회 임원들의 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진술이 핸드북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첨언하여, 이와 같은 개정은 협의회가 4 명의 임원들과 2 명의 회원들 수를 (4 명의 임원과 2 명의 회원)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들을 유지하면서도, 협의회 구조를 위한 유연함을 제공한다.

## 결의안 6

### 출처: NMI 중앙 협의회 (General Council)

회칙 제 5 조, 제 1 항 2. 구성 2)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 5 조. 협의회와 임원, 제 1 항 개교회 국제선교협의회, 2. 구성, 2)는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협의회 임원들은 기도, 제자양육, 교육, 그리고 구제를 통하여 선교하는 교회를 구성토록 하는데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선교 교육, 선교사 후원회 (LINKS), 기도와 금식, 선교 소명, 옥합헌금 서기, 선교사 건강관리, 근로봉사 전도단, 세계 선교방송 서기, 설외, 나사렛 구제사역, 아동 선교, 청년 선교, 그리고 개 교회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역을 위한 책임을 맡는다. 분회 회장들은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의 임원이 된다. 협의회 임원은 한 개 이상의 직위를 가질 수 있으나 투표에서 오직 한 표만을 갖는다.

이유: 나사렛국제선교회(NMI)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NMI 의 4 개 목표들을 통하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기도, 제자양육, 교육과 구제. 협의회 임원들의 책임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이와 같은 나사렛국제선교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협의회 임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들과 자료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는 NMI 의 목적을 진술하는 것이 협의회 임원들의 책임을 논하는데 있어서 더 적절한 표현이다. 이와 같은 분명한 진술이 핸드북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첨언하여, 이와 같은 개정은 협의회가 4 명의 임원들과 2 명의 회원들 수를 (4 명의 임원과 2 명의 회원)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들을 유지하면서도, 협의회 구조를 위한 유연함을 제공한다.

## 결의안 7

### 출처: 미주리 (Missouri) 연회

회칙 제 5 조, 제 2 항: 연회 나사렛국제선교협의회; 2. 구성 3)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실행위원회는 연회감독, 국제나사렛선교협의회 임원들, 그리고 다른 2명 3명의 협의회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유: 부회장은 자동적으로 임원중의 한 명이 되고, 또한 필요로 하는 4 명의 협의회 회원들 중의 한 명으로 선출되기에, 결과적으로 선출이 필요한 협의회 회원수가 3 명이 남게 되는데, 이 중 2 명은 대체적으로 실행위원회로부터 구성이 된다. 만약에 우리가 3 명의 실행위원들을 가진다면, 이는 선출을 필요로 하는 모든 협의회 회원들을 포함할 것이다.

## 결의안 8

### 출처: NMI 중앙 협의회 (General Council)

회칙 제 5 조, 제 2 항 3, 2) (8)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회칙 제 5 조, 제 2 항 3, 2) (8)로부터 아래 문장이 삭제되어야 한다: “중앙 대회를 위한 대의원들과 대리자들은 연회 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대리자들은 독립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거나, 연회 협의회 의 추천으로 대의원들과 동일한 무기명투표로 선출될 수 있다.” 그리고 대의원 수의 결정과 선출 시기에 관한 이 결의안을 제 6 조 3 항, 1, 3), (2)으로 이동한다.

이유: 중앙 NMI 대회를 위한 대표자들을 선출하는 방법이 대표자들의 수를 결정하는 항목에서 같이 다루어지는 것이 더 적절하다.

## 결의안 9

### 출처: NMI 중앙 협의회 (General Council)

회칙 제 5 조, 제 2 항 4, 3, (3), 과 제 6 조, 제 3 항 1, 3, (1)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나사렛국제선교회 프로그램 조정관”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지구 나사렛국제선교회 프로그램 조정관”이라는 용어를 기입하도록 개정한다.

이유: “지구 나사렛국제선교회 프로그램 조정관”이라는 호칭이 이 직책의 역할을 더욱 정확하게 기술한다. 이 직책의 리더는 단순히 NMI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NMI 사역들을 조정한다.

## 결의안 10

**출처: 켄터키 (Kentucky) 연회**

회칙 제 5 조, 제 3 항 3, 3, (5)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중앙 협의회 위원의 선출

중앙 협의회 위원 시무 임기는 2회의 연임에 국한한다 제한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은 2 회의 연임 이후에 반드시 재선되어야 한다. 1 회의 시무 임기는 4 년이다. 만약 그가 중앙 협의회 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되었다면, 그 또한 2회에 걸쳐 온전한 중앙 협의회의 선출에 근거하여 무제한으로 사역할 수 있다.

이유: 자격이 있고 경험 있는 지도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 결의안 11

**출처: 테네시 (Tennessee) 연회**

제 5 조, 제 3 항, 3, 3, (5)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중앙 협의회 위원 시무 임기는 2회 연임에 국한한다. 1 회의 시무 임기는 4 년이다. 만약 그가 중앙 협의회 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되었다면, 그 또한 2 회의 임기를 다 채워 봉사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연속적으로 2 회 이상으로 봉사할 수 없도록 한다. 누구든지 적어도 2 회의 임기 후, 1 회(4년)는 봉사하지 않은 후에 다시 선출되어 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유: 이 개정은 성장하는 젊은 지도자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동시에, 또한 경험 있는 지도력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 결의안 12

### 출처: 중앙 플로리다 (Central Florida) 연회

제 5 조, 제 3 항, 3, 3 (5)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의 시무 임기는 4 년이다. 중앙 대회에서 선출된 사람은 최대한 4 회에 걸쳐서 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연속적으로 2 회 이상 봉사할 수는 없고, 나이가 70 세 넘으면 선출될 수 없다. 만약 그가 중앙 협의회 위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해 선출되었다면, 그 사람 역시 최대한 4 회의 임기동안 봉사할 자격이 있다. 그러나, 연속적으로 2 회 이상은 안 된다.

이유: : 중앙 NMI 협의회 회원 자격을 4 년 2 회의 임기로 제한한다면, 협의회는 계속되는 지도력과 방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만일 좀 더 젊고 떠오르는 지도자가 선출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협의회는 위원들이 모두 젊은 세대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생긴다. 다양한 세대로 구성된 협의회야말로 NMI 사역을 계속 전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 결의안 13

### 출처: 캔사스 시티 (Kansas City) 연회

제 5 조, 제 3 항 3, 4 (1)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중앙 협의회는 그 첫 번째 모임에서 1 명의 부회장, 1 명의 총무 그리고 실행위원회를 위한 2명 1 명의 추가위원을 선출한다.

이유:

- 협의회와 실행위원회를 위한 개교회와 연회 총무의 선출과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 결의안 14

##### 출처: 북서 (Northwest) 연회

제 6 조, 제 2 항 1, 3 (3)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각 개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들이다. (만 15 세이거나 그 이상) 선출된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25명 50명 또는 그 이하의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로부터 2 명의 대의원 (협동회원을 제외); 이 수를 넘는 경우 각 25명 50명당 1 명 혹은 초과 과반수에 1 명의 대의원 추가한다.

이유:

- 대의원수를 25 명에서 50 명으로 바꾸는 것은 NMI 선발 방식을 *교리와 장정 201.1* 에 구체화되어 있는 연회 총회 대의원 선출을 위한 방식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 이 방법은 개 교회가 연회 총회와 연회 NMI 대회에 참여하는 대의원들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선출 절차를 통일하는 것이다.
- 이와 같은 방법은 연회 총회와 NMI 대회에 참석하는 대의원들의 비용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개 교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 줄 것이다.

#### 결의안 15

##### 출처: NMI 중앙 협의회와 피츠버그 (Pittsburg) 연회

제 6 조, 제 2 항 1, 3 (3)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한다: “회원권 선출이 이루어지는 개 교회 NMI 연차 총회에 보고된 NMI 회원권에 근거해야 한다. 개 교회 NMI 추천위원회는 대의원들을 추천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제 6 조, 제 2 항 1, 3 (3)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나타나야 한다:

각 개교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들이다. (만 15 세이거나 그 이상) 선출된 대의원의 수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25 명 또는 그 이하의 개교회 나사렛국제선교회로부터 2 명의 대의원 (협동회원을 제외); 이 수를 넘는 경우 각 25 명 당 1 명 혹은 초과 과반수에 1 명의 대의원 추가한다. 회원권 선출이 이루어지는 개 교회 NMI 연차 총회에 보고된 NMI 회원권에 근거해야 한다. 개 교회 NMI 추천위원회는 대의원들을 추천하게 될 것이다.

이유: 이와 같은 개정은 연회 NMI 대회와 관련한 개 교회 NMI 를 대표하는 대의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회원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추천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 결의안 16

### 출처: NMI 중앙 협의회 (General Council)

제 6 조, 제 3 항 1, 2 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회칙 제 6 조, 제 3 항 1, 2 의 다음처럼 변경되어야 한다: 대회의 시기와 장소는 담당 중앙감독과 상의하여 중앙 협의회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앙 협의회는 공적인 장소들을 승인할 것이고 실천적인 계획들의 실행을 보증해야 할 것이다.

이유:

- 최근 들어 미국 행 비자를 받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
- 젊은 대의원들이 이들 미국 행 비자를 받는 것이 많이 어려워진 사람들의 대부분이기에, 중앙 협의회는 실천은 전 세계를 대표하는 연령의 노소를 아우르는 대의원들을 고려하는 것이다.
- NMI 중앙 협의회는 중앙 NMI 대회의 정신을 축소하지 않기 위해 모든 선출된 대의원들이 모든 장소에서 열리는 토론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실천적인 배열, 배치들을 보증하도록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 결의안 17

### 출처: NMI 중앙 협의회(General Council)와 피츠버그 (Pittsburg) 연회

제 6 조, 제 3 항 1, 3 (2)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첨가한다: e words, “회원수는 선출이 거행되는 연회 대회에 보고된 NMI 회원수에 근거하여 산출될 것이다. 연회 추천위원회는 대의원들을 추천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6 조, 제 3 항 1, 3(2)의 내용은 다음처럼 나타난다:

중앙 대회를 위해 선출된 대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바탕으로 한다: 협동 회원을 제외한 정회원으로, 회원이 1000 명 또는 그 이하의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원을 가지고 있는 3 단계 또는 연회로부터 2 명의 대의원이 파송될 수 있고, 매 추가 700 명당 1 명 또는 초과 과반수에 1 명의 추가 대의원을 파송할 수 있다. 회원수는 선출이 거행되는 연회 대회에 보고된 NMI 회원수에 근거하여 산출될 것이다. 연회 추천위원회는 대의원들을 추천할 것이다.

(연회 단계들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는 교리와 장정 200.2 단락을 보시오.)

이유: 이와 같은 개정은 중앙 NMI 대회와 관련한 개 연회 NMI 를 대표하는 대의원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회원권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추천 과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시하는 것이다.

## 결의안 18

### 출처: 인디아나폴리스 (Indianapolis) 연회

제 6 조, 제 3 항 1, 3 (3)의 내용에 다음과 같이 더 첨가한다:

중앙 대회를 위한 대의원들과 대리자들은 연회 대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대리자들은 독립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되거나, 연회 협의회  
추천으로 대의원들과 동일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될 수 있다. 대의원들과  
대리자들은 연회 협의회의 추천에 근거하여 연회 대회의 참석한 자의 3분의 2  
가 투표로 승인하면 무기명 투표 후 다수표에 의해서 선출될 수 있다. (대의원  
수와 선거 시기 결정에 관해서는 제 6 조, 제 3 항 1, 3 (2)를 보시오.)

다음의 단락들은 다시 배열되어야 한다.

이유: 대의원들과 대리자들을 다수표에 의해서 선출하기를 원하는 연회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 **결의안 19**

### **출처: NMI 중앙 협의회 (General Council)**

제 7 조, 제 1 항 2 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제 7 조 기금, 제 1 항 개 교회에서 거출된 기금, 2 승인된 특별선교 헌금 1 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할당된 세계선교기금(WEF) 외에 승인된 특별 선교를 위한 특별 헌금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옥합 성금, 세계 선교 방송 사업기금, 나사렛 구제 사역, 선교사 교회방문헌금, 선교사 건강관리, 선교사 후원회 (LINKS), 선교사 건강관리, 근로봉사 전도단, 나사렛국제선교회 국제 학생 장학 기금 등).

이유: 승인된 특별 선교의 목록들이 모든 특별선교의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이 리스트는 핸드북에서 정리가 되어야 하며, 모든 승인된 특별선교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결의안 20- 중앙총회 결의안 (A Resolution to the General Assembly)**

### **출처: 새로운 세대와 연결을 위한 위원회**

나사렛교회 교리와 장정 단락 혹은 섹션 표제 903.16

###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가치**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변호하라” (잠언 31:8)고 명한다. 쉘마 (신명기 6:4-7; 11:19)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충고한다. 시편 78:4 은 선언한다, “우리가 이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 자손에게 전하여 줄 것이니, 곧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능력과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미래의 세대에게 전하여 줄 것이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8:16 절에서 이 말씀을 확증하신다,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의 것이다.”

이와 같은 성서적 관점에 반응하여, 나사렛교회는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며 그의 나라에서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들에 관심을 가지라고—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원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라-- 명하셨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것이니, 우리가 어린이들을 구원의 생명으로 그리고 은혜 안에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구원, 성결, 그리고 제자도는 어린이의 삶 속에서 가능하며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린이들이 목적을 향한 수단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맡겨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인식한다. 어린이들은 훈련 속에 있는 제자들이지, 기다렸다 나중에 되어지는 제자들이 아닌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개 교회에서 어린이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전인적이며 변화를 가져오는 사역이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효과적이며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사역들이 전인적으로 어린이에게 제공되도록 한다—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역;
- 어린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오늘날의 사회정의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에 대해서 분명하게 표현한다;
- 어린이들을 믿음의 공동체의 선교와 사역의 중심과 연결시키도록 한다;
- 어린이들을 제자로 만들고, 이들을 훈련시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든다;
- 부모들을 훈련시켜 그들의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양육되도록 한다.

교회의 교육 기관들 (성경 학교들, 대학, 대학교, 그리고 신학교)은 학생들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도록 교육하기때문에, 이들 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가치를 전달하는 비전과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기관들은 개 교회들과 가족들과 함께 하나의 책임을 다하는 일에 연합하는데, 이러한 책임이란 성직자와 평신도로 하여금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서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깨어있도록 양육하는

것이며, 또한 그들의 사회를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며, 변화시키기 위해 이미 알고 있거나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도전들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이다

나사렛교회는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마음에 그리고 있는데, 이곳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사랑 받고, 가치를 인정 받으며, 이곳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으며, 광범위한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통하여 교회 가족으로 편입되며,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데, 이 일을 하는 방법은 그들의 나이, 계발, 능력, 그리고 영적인 은사와 조화를 이루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1. 어린이 시절에, 예수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어린 예수의 말을 들었으며, 예수의 통찰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2. 성인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존중했고 환영했다.
3.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존중 받지 못하며, 양육 받지 못하고 있다.
4. 다원주의와 포스트모던 사고의 특징을 보이는 세계에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인구통계학적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다.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한 좋은 나이는 “4/14 창문”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4 세에서 14 세 사이의 연령층을 말하는 것이다. 한 어린이의 신뢰감은 태어나서 1 년 안에 개발이 된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는 자애로우며, 돌보기 좋아하는 어른들이 어린이의 전 존재의 필요들과 만날 때, 형성이 되는 것이다.

#### **결의안 21**

**원천:** 나사렛 국제 선교회 중앙위원회 산하 실행위원회

신조 VI, 의 3 항 A 에 다음을 추가할 것을 결의함.

선출직 대의원이나 적절하게 선출된 대의원들이 중앙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실이 중앙 대회가 열리기 전 이전 연회총회에서 판명된 경우, 연회의 나사렛 국제선교회 임원회는 그들을 교체할 부대위원들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한 교체 사실은 대의원 임명을 받을 자들에게 중앙 나사렛 국제 선교회 대회가 열리기 전 늦어도 두 달 전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유 : 각 연회의 나사렛 국제 선교회 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이나 부대의원들이 중앙 나사렛 국제 선교회 대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결의안 22

출처 : 나사렛 국제 선교회 실행위원회

기관 규칙 제 5 조 ‘협의회와 임원,’ 3 항 ‘중앙 협의회,’ 2e 항목 ‘중앙회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결의함:

중앙회장은 나사렛 국제 선교회 중앙 대회의 종료 시점부터 다음 대회의 종료 시점까지, 혹은 임기를 보장받은 후임자가 선출되기까지 중앙총회의 종료 시부터 다음 중앙총회의 종료시까지 4 년의 임기 동안 봉직한다.

이유:

1.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는 회장이 아니라, 임기 동안 봉직한 회장이 중앙 총회에서 나사렛 국제 선교회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새로이 선출된 회장은 나사렛 국제 선교회 실행위원회나 중앙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동안의 업무 전반에 관한 논의를 이끌어갈 배경 지식을 구비하지 못할 수 있다.
3. 신임 중앙 회장은 총회 직전에 선출된 관계로 업무파악이 안된 탓에 중앙 총회에서 나사렛 국제 선교회를 적절히 대변할 수가 없다.
4. 나사렛 청년 연합회의 기관 규칙과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

#### 결의안 23

출처 : 나사렛 국제 선교회 실행위원회

기관 규칙 제 5 조 ‘협의회와 임원,’ 3 항 ‘중앙 협의회,’ 3d 항 ‘중앙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결의함:

협의회 임원들은 나사렛 국제 선교회 중앙 대회의 종료 시점부터 다음 대회의 종료 시점까지, 혹은 임기를 보장받은 후임자가 선출되기까지 중앙총회의 종료 시부터 다음 중앙총회의 종료시까지 4 년의 임기 동안 봉직한다.

이유 :

1. 수정 결의안 22 번과, 기관 규칙 제 5 조, ‘협의회와 임원,’ 3 항: ‘중앙 협의회,’ 2e 항목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
2. 나사렛 청년 연합회의 기관 규칙과의 일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

#### 결의안 24

출처 : 나사렛 국제 선교회 실행위원회

기관 규칙 제 6 조: '모임,' 3 항 : '중앙 모임'; B 항목: '모임에 관한 규정'을 단락 'a'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결의함:

중앙 대회에서 새로 선출된 중앙 협의회는 중앙 총회가 끝나기 전 조직과 계획을 위한 목적으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

현재의 규칙 제 6 조, 3B 항의 단락은 단락 'b'가 된다.

이유 : 신입 나사렛 국제 선교회 협의회가 중앙총회의 종료와 함께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기 전 조직과 계획을 위한 모임을 갖도록 하기 위함.

#### 결의안 25

출처 : 나사렛 국제 선교회 간부회

주의 : 본 결의안의 취지는 나사렛 국제 선교회의 잠정적인 조치와 현안 중인 중앙 총회의 조치를 융화시키고자 함에 있다. 중앙 총회 결의안 GA 307 은 중앙 총회에 선교사들 파견하는 일과 관련한 개정된 절차를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앙 총무국의 승락을 받도록 되어 있다. 편의를 위해 GS 307 은 밑에 제시되어 있다. 만일 나사렛 국제 선교회 총회에서 본 결의안을 가결하면, 본 결의안은 오직 GA 307 이 중앙 총회에서 가결되므로써만 보완될 수 있다.

나사렛 국제 선교회 헌법 5 조 3 항의 단락 A3c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 위해서는 오직 GA 307 이 중앙 총회에서 가결되고 현안 중인 중앙 총회의 조치가 나사렛 국제 선교회의 헌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c. 50 명 이하의 선교사들을 보유한 세계 선교 지구에 속한 한 명의 지구촌 선교사 대의원이나 선교사 수 51 명 이상의 각 지구의 두 명의 지구촌 선교사 대의원들은 소속 지구 내의 선교사들이나, 중앙 국제 나사렛 선교회 총무국에서 채택한 방법에 의해 추천되고 선출된 [각 지구 실행 위원회에 의해 선출된]다.

이유 :

1. 1. 본 결의안은 해당 지구에 파송된 종신 선교사들이 중앙총무국에서 인준한 절차에 따라 선교사 대의원들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는 현재의 지구별 실행위원회에 의해 선교사 대의원들이 임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나사렛 교단의 통치 형태가 대의 정치적인 것임을 감안할 때, 중앙총회에 참석할 선교사 대의원들은 해당 지구의 선교사들과 선교 풍조를 반영하는 사람이어야지, 단지 해당 지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서는 안된다. 아울러 지구별 실행위원회는 선교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교사들로 하여금 중앙총회의 선교사 대의원들을 선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사이다.

## GA 307

중앙총회 회원권 - 선교사 대의원에 관한 건

Robert D. McCroskey 외

장정 301, 344.3 에 해당함

장정 301 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결의함:

### B. 중앙총회 회원권

301. 중앙총회는 다음의 대의원들로 구성된다. 3 단계 연회로부터 선출된 동수의 교역자와 평신도 대의원. 단, 연회감독은 교역자 대의원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며 나머지 교역자 및 평신도 대의원들은 나사렛성결교회 연회에서 선출한다. 명예 및 은퇴 중앙감독, 중앙감독, 중앙총무, 중앙재무, '성결의 소리' (Holiness Today) 편집인, 중앙위원회 여러 국, 부의 실행 국장 및 부장들, 중앙 교육 위원장, 지구장들, 중앙 나사렛국제선교회 회장, 세계 나사렛국제청년회 회장, 지구 신학교 및 대학의 총장들(한 개 이상의 학교가 존재하는 지구에서는 1 인 대표자를 지구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한다), 학교 이사들이 여러 연회대표들로 구성되는 초지구적 학교의 장들, 나사렛 출판사 사장, 캐나다 나사렛성결교회 자국총회장, 나사렛성결교회기금 의장, 부흥운동 책임자, 50 명 이하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지구의 선교사 대의원 1 명, 51 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선교사 대의원 2 명으로서 [각 지구의 실행위원회에서 선출된다] 해당 지구에 파송받아 사역중인 종신 선교사들에 의해 중앙 총무국에 의해 비준된 방법에 따라서 추천되고 선출된다. 만약 지구에서 선출되지 않는 경우 선교사 대의원들은 세계선교국에서 선출된다.

나아가 장정 344:3 은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결의함 :

344.3. 지구 실행위원회 : 각 지구별로 지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 역할은 해당 지구에 대한 개발 전략을 세우는데 있어서 지구장을 보조하며, 국가위원회의 의사록을 중앙총무 사무실로 보내기에 앞서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거부하여 보내며, 세계선교국에 추천할 선교사 후보들이나 철수할 선교사들을 면접하며, 지구장이나 전략 책임자들, 또는 사역 조정자들의 보고를 접수하며, [장정의 규정에 따라 중앙총회에 참석할 선교사 대표들을 선출하며,] 그리고 국제 교육 기관 위원회의 교장이나 학장, 또는 총장을 중앙총회의 대의원으로 선출하는 일 등이다.

지구 실행위원회의 구성은 각 지구의 필요와 발전과 요구에 따라 지구별로 변동이 가능하다. 지구장은 지구 실행위원회의 구성을 세계선교국장과 관할 중앙감독의 승인을 받기 위해 추천한다. 직책상 회원은 관할 지구 중앙감독과 세계선교국장 그리고 의장으로 시무하는 지구장이 된다. 세계선교국 임원은 지구 실행위원회를 위한 피선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조력자로 봉사할 수는 있다. 지구 실행위원회 위원들은 중앙총회 지구 대의원 회의의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다. 지구 실행위원회는 중앙총회 사이에 총원될 수 있다.

지구장은 지구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필요에 따라 지구 복음 회의나 지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